

해당하는 외화금액에 대해 차액결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액결제 처리 당시 은행의 현물환율과 본 계약에서 정한 선물환계약환율을 적용하여 해당 외화금액에 대해 차액정산한다.

제 4 조 담보권 설정 및 실행

① 이 계약에 의한 고객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에 정한 목적물(이하 “담보목적물”)에 질권을 설정한다.

■ 질권의 목적물 표시 :

아래의 계좌에 현재와 장래에 입금 또는 입고되었거나, 입금 또는 입고되는 모든 현금 및 증권(주식, 수익증권 등의 원금 및 이자 포함) 전부

펀드 및 예금종류	계좌번호	계좌명의인	계좌관리점
			홍콩상하이은행 지점

② 제 1 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 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 수익의 수익권, 특별이자, 장려금, 배당금, 상환금과 무상주 등에 미친다.

③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기한연장, 개서, 갱신, 분할, 병합, 증액, 감액 등을 한 때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은행은 질권설정통장, 선물환계약서 등(이하 ‘증서 등’이라 한다)의 증서상의 인영 또는 서명을 고객이 미리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과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 등과 도장 또는 서명에 관하여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은행은 환율 또는 담보목적물 평가가치 등의 변동으로 인해 이 계약에 의한 고객의 채무가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추가적인 담보제공에 대해 고객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다.

⑥ 고객이 결제일(중도해지 포함)에 이 계약에 의한 고객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은행은 담보목적물 및 추가 담보를 처분(담보목적물의 환매 청구 포함)하여 고객의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 5 조 결제일 적용

결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결제일로 한다. 단, 영업일은 외환시장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6 조 은행에 의한 결제일의 연기 또는 계약의 종료 등

① 천재지변, 폭동, 소요, 내란, 전쟁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결제일에 선물환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은행은 동 사유가 해소된 후 가장 빠른 은행영업일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날로 결제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경우 은행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선물환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 7 조를 준용한다.

제 7 조 고객에 의한 계약의 해지 등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선물환거래 결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중도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할 환율은 고객과 협의하여 중도해지 당시 스왑환율 등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은행이 산정하며 이에 따라 중도해지시에는 최초 계약한 선물환계약환율과는 다른 환율(“중도해지 환율”)로 결제된다. 이 경우 고객은 중도해지 신청 당시 은행의 현물환율로 매입함과 동시에 중도해지 환율로 매도하여 선물환계약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차액정산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조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익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8 조 은행에 의한 해지

고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은 선물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그 해지의 사실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할 환율은 고객과 협의하여 중도해지 당시 스왑환율 등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은행이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중도해지시에는 최초 계약한 선물환계약환율과는 다른 환율(“중도해지 환율”)로 결제된다. 이 경우 은행은 중도해지 당시 은행의 현물환율로 매입함과 동시에 은행중도해지 환율로 매도하여 선물환계약금액 전부에 대해 차액정산 할 수 있으며, 차액정산시 적용 현물환율은 해지에 따른 차액결제 처리 당시의 현물환율로 한다.

1. 이 계약에 의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그러한 불이행이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불이행 사실이 통지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이 계약(제 4 조 제 5 항에 의한 추가담보 약정 포함)에 의한 담보제공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그러한 불이행이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불이행 사실이 통지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이 계약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이 계약에 따라 고객이 은행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5. 고객 자산(제 4 호의 권리를 제외한다) 또는 그 신용제공인 자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6. 고객 또는 그 신용제공인이 은행이나 제 3 자에 대한 차입관련채무(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 우발채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 기타의 자격으로 부담하는 채무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고객 또는 그 신용제공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거나 고객 또는 그 신용제공인에 대한 정보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또는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8. 고객 또는 그 신용제공인에 대하여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고객 또는 그 신용제공인이 지급정지나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인정하거나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사실상 지급을 정지한 경우
9. 고객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채권자와의 사이에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 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10. 고객 또는 그 신용제공인의 합병, 분할, 주식의 교환이나 이전 또는 자산의 전부나 중요 부분의 양도,

고객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규모의 다른 법인 자산의 양수, 자본구조의 현저한 변경, 경영권의 변동이나 관련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고객 또는 그 신용제공인의 신용도가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은행이 판단한 때

11. 고객 또는 그 신용제공인에 대하여 제 11 호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그 사업, 자산, 경영, 재무상황에 중대한 부정적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은행이 판단한 때
12. 고객 또는 그 신용제공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자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제 3 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이 계약에 의한 고객 또는 그 신용제공인의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13. 고객 또는 그 신용제공인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14. 고객 또는 그 신용제공인이 감독기관으로부터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금융 및 증권 관련법령에 의하여 고객 또는 그 신용제공인의 자산이나 거래당사자 또는 그 신용제공인이 보유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15. 고객 또는 그 신용제공인에게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 지거나 법원에 대한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16. 이 계약 체결 이후 법규의 제·개정, 해석변경 또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고객 또는 그 신용제공인이 이 계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된 경우

제 9 조 비용등의 부담

- ① 이 계약에 의한 선물환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 손해배상금 등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 ② 고객은 결제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그 결제할 금액에 대하여 결제일로부터 결제일 당시 1년만기 원화정기예금담보대출연체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제 10 조 양도의 금지 등

고객과 은행은 거래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건 선물환계약에 의한 권리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1 조 준거법령 등

고객과 은행은 이 계약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외국환 관련 법규, 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한다.

제 12 조 위험고지

고객은 본 계약서에 첨부된 [별표 2]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를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은행에 확인한다.

제 13 조 고객의 변경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대리권의 범위 기타 고객이 은행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 계약등의 변경

- ① 은행은 이 계약 및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전에 그 변경내용을 은행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한다.
-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시행일 최소 14 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은행은 계약서를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 조 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1. 선물환 거래 계약자는 선물환 거래에 동반된 위험을 포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p> <p>2. 선물환 거래 계약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_____ (인)</p>
--

[별표 1]

선물환거래 결제신청서

1. 고객정보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은행/지점	홍콩상하이은행 지점	고객/계좌번호	

2. 선물환계약 내용

선물환계약금액	(통화 :)
선물환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선물환계약환율	KRW/(통화 :)

3. 선물환계약결제방법 및 계좌

결제 방법 (택 1)	1. 만기차액결제 <input type="checkbox"/> * 일부 차액결제 포함		2. 중도해지 <input type="checkbox"/> * 차액결제 포함	
	차액결제시 적용 현물환율	KRW/(통화:)	중도해지일	년 월 일
			중도해지 환율	KRW/(통화:)
			차액결제시 적용 현물환율	KRW/(통화:)
결제 계좌	외화계좌번호		원화계좌번호	

1. 만기 차액결제: 담보목적물인 펀드를 환매하지 않는 경우 등 선물환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물환계약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금액에 대해 결제일 현물환율(Spot Rate)과 선물환계약환율(Forward Rate)의 차이에 따라 그 차액만을 정산한다.
- 결제일 당일 현물환율이 선물환계약환율보다 낮을 경우(원화가치가 상승한 경우):
결제차익이 발생하며 이익금은 고객이 지정한 원화 결제계좌에 입금된다.
 - 결제일 당일 현물환율이 선물환계약환율보다 높을 경우(원화가치가 하락한 경우):
결제차손이 발생하며 손실금은 고객이 지정한 원화 결제계좌에서 차감된다.
2. 중도 해지: 선물환계약 결제일 이전에 고객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 중도 해지 당시 적용되는 스왑환율(Swap Rate)등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최초 계약한 선물환계약환율과는 다른 환율(중도해지 환율)로 결제된다. 이 경우 고객은 중도해지 신청 당시 은행의 현물환율(Spot Rate)로 매입함과 동시에 중도해지 환율로 매도하여 선물환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차액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중도해지에 따른 손익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된다.

본인은 선물환계약에 동반된 위험(환손실 발생가능)을 포함한 중요한 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또한 귀행과 체결한 선물환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외국통화와 국내통화간의 매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결제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이와 관련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표 2]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이에 관한 선도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 및 이들 거래를 조합한 거래를 포함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러한 위험의 정도는 거래 종류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위험고지에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고객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본질과 손실을 볼 잠재적인 위험의 정도를 이해하고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금융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도 있을 수 있으며, 기한전 거래종료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거래 목적, 위험을 수용하는 자신의 성향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각 거래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에 수반하는 여러 위험은 고객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은 이들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고객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고객이 알아야 하는 주요 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장 위험(Market Risk)

이는 기초자산의 가격 등이 변동함에 따라 거래의 시장가치가 변화할 위험입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시장상황이나 변동에 따라 그 자체로서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변동성은 기초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또는 연관된 경제상황 등의 변동 등에 의하여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거래의 가치가 보다 급작스럽게, 빈번하게 또는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은행과 담보 약정을 한 때에는 그러한 약정 및 개별 거래의 조건에 따라 거래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추가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거래를 은행이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이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거래를 청산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되는 위험입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일반적으로 개별 고객의 특정한 요구에 맞추어 만들어지는 거래인 관계로 정해진 만기일 전에 거래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청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신용 위험(Credit Risk)

이는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즉, 파산 등의 사유로 거래상대방이 그 의무를 전부 이

행할 수 없게 될 위험입니다.

4) 통화 위험(Currency Risk)

외국통화로 표시된 거래에서 환율 변동으로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5) 관리 위험(Operational Risk)

이는 거래를 관리하는 내부통제 체제나 전산 시스템이 적절하지 못함으로써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6) 해당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주요 위험

선물환 거래에 대한 위험사항은 선물환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4) 이 위험고지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과 그 밖의 주요한 특징을 모두 기술하고 있지 못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 본인이 해당 거래의 여러 계약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하고자 하는 거래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전문가나 그 밖에 제 3 자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한 이후 거래를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에 관하여 은행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또는 법인명: _____(인/서명)